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법령에 의해 입원·격리된 자가 치료와 격리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사회로의 전파 방지 및 그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
  - 관련근거
    - 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 70조의 4
    - 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 시행령 제28조의 5
    - 『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(MERS)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』 보건복지부고시(‘20. 2. 7.)
  - 지원대상 : 코로나19로 입원·격리된 자 중 아래 조건 모두 만족한 자
    -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
    -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·격리 통지서 받고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
    -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
- ☞ ‘20. 4. 1.일 0시 이후 입국자(모든 국가)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 지원제외